##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98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손명수·김현정·서영교

허성무 · 김태년 · 김원이

이연희 · 윤종군 · 정태호

민홍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 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식률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고품 질 데이터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식별 화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을 제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제13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란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13. "자율주행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 등의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말한다.

법률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 특례 등) ① 자율주행시스템을 제

작하는 자(이하 "자율주행시스템제작자"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이를 익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		
	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		
	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치를 말한다.		
<u>&lt;신 설&gt;</u>	13. "자율주행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란 자율주		
	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영		
	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		
	영된 영상 등의 정보 중 「개		
	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말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제20391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 · 활용에 관하 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다.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 특례 등) ① 자율주행시 스템을 제작하는 자(이하 "자 율주행시스템제작자"라 한다) 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 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이를 익명처리를 하지 아니하 고 활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 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